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안내

(주야간보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센터는 이용자 상태와 행동양상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센터에 대해 이용자부담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까지로 한다.
- ②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 범위

- 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② 등급외자는 정원의 20% 이내 이용 가능,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관할 구청에서 이용을 의뢰한 자 우선으로 한다.

□ 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 대상자에게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 입소절차

이용대상자의 입소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①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을 받는다.
- ②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 ④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⑤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 서비스 제공 내용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 호와 같으며 그 비용의 부담금은 없다.

1. 기본서비스 : 급식/간식서비스, 이동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등
2. 신체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기능회복서비스 등

3. 사회심리지원서비스 :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치매관리프로그램, 심리정서강화 프로그램 등
4. 간호/위생지원서비스 : 건강관리, 일상생활서비스 등
5. 지역사회자원 연계 : 어버이날, 노인의 날, 명절 행사, 치매검진 등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와 등급외자는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 금액을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 ②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준하여 마련한 '내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 ③ 이용료에 대한 변경은 등급과 요양보험수가, 비급여 변경에 따른다. 다만 이용료가 개정되었을 때는 이용자 주보호자에게 유선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통지하고 본 계약이 계속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④ 등급외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이용료는 서울형 좋은돌봄 데이케어 운영지원 지침에 따른다.
- ⑤ 이용료는 익월 20일까지 후납 하도록 한다.
- ⑥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20일까지 납부한다.
- ⑦ 이용료의 납부는 온라인 입금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항으로 온라인 입금이 어려울 경우 예외로 한다.
- ⑧ 센터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료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기준을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시)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사전 고지 후 동의서를 받는다.

□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②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 ③ '제공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8:00 ~ 22:00	월2회 토요 운영
토	09:00 ~ 18:00	

□ 이용계약자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 ③ 보호자(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 이용료 미납

이용료 미납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항목)가 미납되어 센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는 납부일 1개월 전에 지불할 것을 독촉하고 문서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 ②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인, 가족, 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해가기 위해 재가서비스 제공, 타시설, 입원 등 수속을 협조해 주며 조정해 주도록 노력한다.
- ③ 이용자가 이용료의 누적체납, 연락두절 등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신원인수인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이행하고 입소자의 거취를 책임져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갑”이 “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2.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해야한다.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을 선고받았을 때
 -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3.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4. 인수인은 이용계약과 함께 이용자가 안정된 센터 이용을 위해 본 데이케어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5. 인수인은 본 센터 이용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6.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 개인물품

- ①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제공자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센터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2. 장기요양급여 비용 연체가 장기간되었을 경우
- 3.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4. 입원 등의 사유로 3주 이상 장기 결석하는 경우
- 5.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협조가 되지 않을 때

□ 계약의 종료

센터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였을 때 입소자와 계약을 종료한다.

- 1. 이용대상자의 사망
- 2. 이용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등
- 3.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